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64호 2022. 10. 5.(수)

공 고

○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회람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2022. 10. 5.(수)

목포시 공고 제 2022- 1614 호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5.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정신질환자 등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하여 정신질환자의 이용제한 문구 삭제 및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양 성평등 취지에 맞춘 용어로 개정하고자 함.
- 조례 개정 이후 변동 없는 시설사용료와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신질환자 이용제한 관련 규정 삭제 (안 제11조)
 - 제11조제2호의 사용 제한 대상자 목록에서 정신질환자 규정 삭제
-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 개정 (안 제13조)
 - 제13조제4항 위원구성에 청소년대표 추가 및 위원회의 성별기준 삽입
- 사용료 면제 대상자 용어 변경 (안 제27조)
 - 제27조(사용료의 면제) 제1호의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
- 사용료 기준표 수정

- 3. 개정 조례안 : 붙임1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 5. 관련법령 및 관련안 : 붙임3
 - O「장애인복지법」제8조(차별금지 등)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권익보호) 및 재89조(과태료)
- O「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정의)
- 6. 입법예고 기간 : 2022. 10. 5. ~ 10. 25.(20일간)
- 7.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평가(여성가족과): 해당없음
- 8.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9. 예산사항 : 해당없음
- 10.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25까지 목포시장(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O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O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68), 직접 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 여성가족과(☎061-270-8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	----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의신(시ㅠ)	\\\\\\\\\\\\\\\\\\\\\\\\\\\\\\\\\\\\\\	

붙임1 개정 조례안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사용의 제한 등) 2호 중 "전염병 질환자,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를 "전염병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로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관계 공무원, 교육계인사, 청소년 분야 전문가, 청소년 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료의 면제) 1호 중 "모·부자 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소년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26조 관련)

(단위 : 원)

1) A-1	カ ス	사 {			
시 설	기 준	청소년	일반(성인)	비	고
상 담 실	1시간/팀	무료	5,000		
동아리실	1시간/팀	1,000	10,000		
프로그램실	1시간/팀	2,000	20,000		
노래연습실	1시간/팀	2,000	20,000		
댄스연습실	1시간/팀	2,000	20,000		
악기연습실	1시간/팀	3,000	30,000		
도서대여	권/인	무 료	무료		
북카 페	1시간/인	무 료	2,000		
다목적실	1시간/팀	5,000	50,000		
(세미나실)	1시간/팀	5,000	10,000	냉난	방비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추가사용료(기준시간이용료/기준시간)를 적용한다.
- ·청소년과 일반인(성인)이 1팀으로 구성된 경우 청소년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요금을,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일반요금을 적용한다.
- 7월~9월, 11월~3월에는 다목적실 냉난방을 위한 비용을 추가 징수한다.
- ·청소년회원제를 운영할 경우에는 연중 모든 시설사용료 연회비 20,000원을 징수할 수 있다.(단, 북카페, 다목적홀, 프로그램실 제외)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사용의 제한 등)	제11조 (사용의 제한 등)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전염병 질환자, 정신질환자, 알코올	2. 전염병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중독자	
제13조 (운영위원회)	제13조 (운영위원회)
①~③ (생략)	①~③ (현행과 같음)
④청소년분야 전문가	④ 청소년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청소년 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
	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용료의 면제)	제27조 (사용료의 면제)
1모·부자 가정.	1한부모 가족.

행 혂 개 정 아

[별표]

			사 원	용 료	비
시	설	기 준	청소년	일반 (성인)	고
인터넷	見 PC	1시간/대	100	1,000	
포 켓	당 구	1시간/팀	500	7,000	
영 상	교 실	1일/실	3,000	30,000	
영화 =	관람실	1편/팀	1,000	10,000	
노래음	· 우악실	1시간/팀	1,000	10,000	
댄스인 (대회		1시간/팀	1,000	10,000	
악기인	연습실	1시간/팀	2,000	20,000	
도 서	대 여	권/인	무 료	500	
휴 7	게 실	-	무 료	무료	
세미	나 실	1시간/팀	무 료	30,000	
동 아 (문화 [:]	리 방 활동실)	1시간/팀	무 료	20,000	
청산판	그래운영	월/인	5,000	-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기준시간)를 적용한다.
- ·청소년과 일반인(성인)이 1팀으로 구성된 경우 50퍼센트 이상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요금을, 50퍼센트 미만 인 경우 일반요금을 적용한다.
- ㆍ청소년회원제를 운영할 경우에는 연중 모든 시설사용료 연회비 10,000원을 징수할 수 있다.(단, 청소년프로그램 운영비 제외)

[별표]

	사 용			} 료	비
시 설	기 준	청소년	일반 (성인)	고	
상 담 실	1시간/팀	무료	5,000		
동 아 리 실	1시간/팀	1,000	10,000		
프로그램실	1시간/팀	2,000	20,000		
노래연습실	1시간/팀	2,000	20,000		
댄스연습실	1시간/팀	2,000	20,000		
악기연습실	1시간/팀	3,000	30,000		
도 서 대 여	권/인	무 료	무료		
북 카 페	1시간/인	무료	2,000		
다목적실	1시간/팀	5,000	50,000		
(세미나실)	1시간/팀	5,000	10,000	냉난방비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추가사용료(기준시간이용료/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추가사용료(기준시간이용료/ 기준시간)를 적용한다.
 - ·청소년과 일반인(성인)이 1팀으로 구성된 경우 청소년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요금을, 50퍼센트 미만 인 경우 일반요금을 적용한다.
 - · 7월~9월, 11월~3월에는 다목적실 냉난방을 위한 비용을 추가 징수한다.
 - ㆍ청소년회원제를 운영할 경우에는 연중 모든 시설사용료 연회비 20,000원을 징수할 수 있다.(단, 북카페, 다목적홀, 프로그램실 제외)

붙임3 관련법령 및 관련안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u>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u>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u>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u> 아니 된다.

② ~ ③ 생 략

제8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 략

10.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4.12, 2012.2.1, 2014.1.21]

-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